

충청북도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84
------------	----

제출년월일 : 1999년 2월 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개정이유

- 수출용 중고자동차 취득자·농공단지 대체입주자 및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혜택 부여로 IMF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기타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주요골자

1.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 일부 신설

- 무역업 또는 무역대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중고기계장비·중고선박 및 중고항공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함 (안 제13조 제2항)

2.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규정 신설

- 2001년 12월 31일까지 농공단지내의 휴·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하는 자가 취득하는 농공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취득일부터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함 (안 제19조의2)

3. 외국인투자 유치지원 감면규정 신설

-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현행 외국인투자촉진법에 규정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함에 있어 사업개시일부터 5년간은 전액면제를, 그 다음 3년간은 50% 경감하던 것을
 ⇒ 7년간은 전액면제를, 그 다음 3년간은 50%를 경감하도록 함 (안 제28조의5)

4. 1가구당 1대초과 자동차에 대한 세율적용 특례규정 폐지

-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취득·등록하는 경우 중과세하던 규정이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중과세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감면조례상 감면규정 존치가 불필요하여 이를 폐지함

5.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범위 보완

- 소규모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 취·등록세를 감면함에 있어,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범위를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9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여 판단하였으나, '98. 12. 31. 지방세법시행규칙 개정으로 동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범위를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한 상이등급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 조례에 직접 규정함
 (안 제14조 제3항)

6. 1가구 1주택 판단시 호주승계예정자의 범위 보완

- 소규모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 취·등록세를 감면함에 있어, 1가구 1주택으로 제한하고,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는 동일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여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 부친사망으로 이미 호주승계를 받은 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60세이상의 모친을 부양하는 경우에는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던 것을
⇒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60세이상의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자에 대하여도 감면하도록 함(안 제14조 제3항)

7. 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규정 보완

- 소도읍가꾸기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1년이내에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등록세를 감면함에 있어, 새로이 취득하는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등록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으나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이 명시되지 아니하여 적용상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 대체취득시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3제1항(수용시 초과액 산정기준등)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안 제20조 제3항)

- 조례(안) : 별첨
- 근거법령 :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
- 기타 참고자료 : 별첨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 제목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감면)” 을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대외무역법에 의한 무역업 또는 무역대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 · 중고기계장비 · 중고선박 및 중고항공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제13조의2를 삭제한다.

제14조 제3항중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9조의2에 규정한 국가 유공자 및 장애인” 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에 의한 상이등급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 하고, “호주승계예정자”를 “호주승계예정자 및 호주승계자”로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및개발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에 2001년 12월 31일까지 휴 · 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하는 자가 취득하는 당해 농공단지

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당해 농공단지 관리기관 또는 당해 농공단지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20조 제3항 후단중 “아니하다”를 “아니하며,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은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3의 규정을 준용 한다”로 한다.

제28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5(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충청북도내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함에 있어서는 동법 제9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은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를 경감한다. 다만,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